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9.

발 의 자 : 전진숙 · 김선민 · 서영석
남인순 · 김정호 · 이정문
박 정 · 이수진 · 전용기
오세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영업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.

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의2제1항 전단).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2제1항 전단 중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”를 “1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6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과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의2(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) 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,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(이하 “의약품공급자”라 한다)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(위탁된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)는 <u>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</u>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제46조의2(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1개소 이상 <u>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</u> <u>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